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 2. 1.

사건번호 2010년 형제21936호, 28431호

수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박은정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경민호 (520609-1047611), 58세

직업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010-3754-8463

주거 경기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11 (4/1)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 286

죄명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미우 담당변호사 강충식

##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위 협회 집행부를 대표하여 모든 대내 및 대외적인 활동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연간 300억원이 넘는 위 협회 예산의 최종결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예산을 책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을 무단전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협 정관에서도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대한의사협회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협 재무업무규정에서도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의협과는 별개의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을 의협의 내부직원에 대한 원급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6. 2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기사 월급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과 차량유류비와 기타 경비 명목으로 총 360만원을 총회 의결없이 지급하여 위 대한의학회에 합계 1,56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의 대표자는 임직원을 임의로 중원하거나 그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협 정관에서도 의협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참여이사'라는 임원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거마비 등 보수는 예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 위 의협 사무실에서, 위 정관에 위반하여 임의로 의협 회원 박희봉 등 5명을 참여이사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거마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6. 15.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명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합계 975만원을 지급하여 위 박희봉 등 5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수령인	지급금액(원)
1	2009. 6. 15.	박희봉	200,000
2	"	한동석	200,000
3	"	박성민	200,000
4	"	이혁	200,000
5	"	오석종	200,000
6	2009. 6. 30.	박희봉	200,000
7	"	한동석	200,000
8	"	박성민	200,000
9	"	이혁	200,000
10	"	오석종	200,000
11	2009. 7. 23.	박희봉	200,000

12	"	한동석	200,000
13	"	박성민	200,000
14	"	이혁	200,000
15	"	박희복	200,000
16	2009. 8. 24.	박희복	200,000
17	"	한동석	200,000
18	"	박성민	200,000
19	"	이혁	200,000
20	"	오석중	200,000
21	2009. 9. 24.	박희복	200,000
22	"	한동석	200,000
23	"	박성민	200,000
24	"	이혁	200,000
25	"	오석중	200,000
26	2009. 10. 29.	박희복	200,000
27	"	한동석	200,000
28	"	박성민	200,000
29	"	이혁	200,000
30	"	오석중	200,000
31	2009. 11. 24.	박희복	200,000
32	"	한동석	200,000
33	"	박성민	200,000
34	"	이혁	200,000
35	"	오석중	200,000
36	2010. 1. 29.	박희복	200,000
37	"	한동석	200,000
38	"	박성민	200,000
39	"	이혁	200,000
40	"	오석중	200,000
41	2010. 2. 24.	박희복	200,000
42	"	한동석	200,000
43	"	박성민	200,000
44	"	이혁	200,000
45	"	오석중	200,000
합계			9,750,000원

3. 법인의 대표자는 임직원의 보수를 단체의 자치규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그의 보수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협 정관에서도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의협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의협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관에 위배하여 신원형 등 6명의 의협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6. 18.경부터 2010.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신원형 등 6명에게 휴무일 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3,235만원을 지급하여 위 신원형 등 6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도록 하여,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임원	지급금액	비고
1	2009. 6. 18.	신원형	650,000	상근부회장
2	"	정국면	325,000	보협부회장
3	"	송우철	300,000	총무이사
4	"	조남현	1,200,000	정책이사
5	"	최훈정	150,000	공보이사
6	"	최종현	1,750,000	사무총장
7	2009. 7. 10.	신원형	650,000	상근부회장
8	"	송우철	150,000	총무이사
9	"	조남현	1,800,000	정책이사
10	"	최훈정	150,000	공보이사
11	"	최종현	1,250,000	사무총장
12	2009. 8. 20.	신원형	975,000	상근부회장
13	"	정국면	325,000	보협부회장
14	"	송우철	300,000	총무이사
15	"	조남현	600,000	정책이사
16	"	최훈정	300,000	공보이사
17	"	최종현	1,000,000	사무총장
18	2009. 9. 17.	신원형	1,950,000	상근부회장
19	"	정국면	325,000	보협부회장
20	"	송우철	150,000	총무이사
21	"	조남현	600,000	정책이사
22	"	최훈정	1,050,000	공보이사
23	"	최종현	1,250,000	사무총장
24	2009. 10. 15.	신원형	1,300,000	상근부회장
25	"	송우철	600,000	총무이사
26	"	조남현	900,000	정책이사
27	"	최훈정	450,000	공보이사
28	"	최종현	750,000	사무총장
29	2009. 11. 13.	신원형	975,000	상근부회장
30	"	정국면	325,000	보협부회장
31	"	송우철	300,000	총무이사
32	"	조남현	600,000	정책이사

33	"	최훈정	500,000	공보이사
34	2009. 12.	신원형	975,000	상근부회장
35	"	정국면	325,000	보험부회장
36	"	송우천	300,000	총무이사
37	"	조남현	900,000	정책이사
38	"	최훈정	150,000	공보이사
39	"	최종현	500,000	사무총장
40	2010. 1. 8.	정국면	650,000	사무총장
41	"	송우천	300,000	총무이사
42	"	조남현	300,000	정책이사
43	"	최훈정	150,000	공보이사
44	"	최종현	250,000	사무총장
45	2010. 2. 9.	신원형	650,000	상근부회장
46	"	정국면	650,000	보험부회장
47	"	송우천	1,200,000	총무이사
48	"	조남현	300,000	정책이사
49	"	최훈정	300,000	공보이사
50	"	최종현	250,000	사무총장
합계				32,350,000

4.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예산을 책정된 목적을 위하여 자치 규범 등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은 무단 전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의협 정관에서도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은 할 때는 대한의사협회 총회의 의결을 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협 재무업무규정에서도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과 관사이, 항과 항사이의 예산전용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하되 회장은 사유와 전용금액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협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위 의협 고유사업비에 해당하는 홍보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예산들은 예산 전용의 예외사유인 관과 관사이, 혹은 항과 항 사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협 홈페이지나 의협신문 또는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협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규정에서도 '연구용역 계약의 상대방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별한 학식과 지식을 갖추고 의료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협 재무업무 규정은 외부용역연구비는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1. 위 의협 사무실에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 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월간조선과 사실상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 같은 해 8., 같은 해 9.에 이미 계약한 기사도 연구결과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협내 의료정책 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으로 같은 해 11. 9. 위 월간조선에게 7,000만원을, 2010. 7. 14.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을 의협의 홍보비로 전용하여 위 월간조선에 합계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6. 위 의협 사무실에서, 위 규정에 위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 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엠케이헬스와 사실상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협내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을 주식회사 엠케이헬스에 같은 해 11. 4. 1억 4,000만원을, 2010. 8. 24. 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을 의협의 홍보비로 전용하여 위 엠케이헬스에 합계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의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와 사회 포럼' 대표 박양동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위 의협 사무실에서 위 '의료와 사회 포럼'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용역비를 빙자하여 위 의협 외환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금 1억원을 위 박양동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음날인 11. 25.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협 공금 1억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노환규가 대표이고 의사 3,520명이 회원인 피해자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이라고 함)가 위 의협의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자 위 의협 회원 등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8. 위 의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의협 홈페이지

이지 게시판에 '주간동아 기사의 핵심은 의협은 부실,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주간동아에 적절적인 제보를 하고 의협의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2008년 작성된 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건네 준 것은 노환규가 대표로 있는 전의총이 확실합니다. 각종 자료를 빼돌려 이를 악용하고 개인 신상과 가정사까지 파헤치며 각종 음해 비방을 일삼고 있고, 그 배후에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동원하고 고소, 고발과 각종 음해, 유언비어 날조, 비방과 주변 인물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런 사심에 사로잡혀 음蚀한 곳에서 박杵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에 휘둘려야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위 의협의 대외비인 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주간동아에 유출하거나 주간동아 등 언론을 동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컴퓨터로 출력한 후 위 의협 소속 전국 각 지부 임원 김세현 등 약 1,000여명에게 우편발송하고, 전국의 위 협회 회원 10만명과 언론사 기자 이승우 등 114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의협의 대외비인 감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주간동아에 유출하거나 주간동아 등 언론을 동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III. 첨부

#### 1. 변호인선임서 1부

검사

(인)